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19 선고 2024가단515190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7. 12.

판 결 선 고 2024. 7. 19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31,078,906원 및 그 중 31,078,872원에 대하여 2023. 12. 4.부터 2024. 6. 8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7. 12. 체결된 매매계약은 31,078,906원 및 그 중 31,078,872원에 대하여 2023. 12. 4.부터 2024. 6. 8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2024. 7. 12.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효연

별지